

제28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7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번호	조례명	쪽수
2025-118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5-119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21
2025-120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28
2025-121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광진흥과)	46
2025-122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관광진흥과)	56
2025-123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64
2025-124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	78

#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5-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거창군 주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거창군민과 명예군민에게 주차장 및 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위해 5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이용료 면제(안 제1조~제4조)

- 1) 대상: 거창군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2) 시설: 수송대, 향노화힐링랜드, 산림레포츠파크, 창포원

나. 시설 이용료 30퍼센트 감경(안 제3조~제5조)

- 1) 대상: 거창군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 2) 시설: 산림레포츠파크, 창포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6. 25.~7. 15.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3 제1호더목 중 “사람”을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을 “제10호의6까지, 제14호(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중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 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제3조(「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장: 면제
2.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30퍼센트 감경

제4조(「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른다. 다만,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감면을 100분의 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100분의 30

제5조(「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을”을 “시설 이용료를”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무료입장	시설 이용료 감경
5. 거창군에 <u>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u>	<u>100분의 30</u>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1.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li> <li>2. 관광지 내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li> <li>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li> <li>4.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5.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p> <p>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li> <li>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중복 감경할 수 없다.</p> <p>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제4항전단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p>	<p>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li> <li>2. 관광지 내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li> <li>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li> <li>4.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li> <li>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li> </ol> <p>6.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p> <p>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li> <li>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소비활동을 한 야영장 이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과 중복 감경할 수 없다.</p> <p>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제4항전단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p>

## 2.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9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li> <li>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li> <li>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li> <li>2. 영 제9조의9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u>제10호의4까지의 규정</u>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li> </ol> <p>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p>	<p>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9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li> <li>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li> <li>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li> <li>2. 영 제9조의9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u>제10호의4까지, 제10호의6, 제14호(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u>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li> </ol> <p>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p>

### 3.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p>	<p>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주차장: 면제</p> <p>2.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 30퍼센트 감경</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p>

### 4.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0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p> <p>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20조(입장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p>

5.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u>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u>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p> <p>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p> <p>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p>	<p>제8조2(시설 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u>시설 사용료를</u>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p> <p>② 별표 2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감경은 비수기(금요일·토요일, 7·8월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한다.</p> <p>③ 시설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p>

## 거창군민에 대한 관광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일괄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군민과 명예군민에게 주차장 이용료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  
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

### 3. 미첨부 사유

- 가.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1) 2024년 주차장 이용료 세입 8,015천원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예상
- 나. 거창군 거창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1) 2025. 3. 25.(개장)~2025. 7. 15. 동안 주차장 이용료 세입 194천원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예상
- 다. 거창군 거창향노화힐링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1) 2025. 1. 1.~2025. 6. 30. 동안 주차장 이용료 세입 13,723천원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예상
- 라. 거창군 창포원 및 운영 조례, 거창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 조례  
1) 2025년 현재 주차료 미징수 중이어서 주차장 이용료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가 없음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송대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3]

1. 썰매장과 야영장의 이용료 감면기준

대상	감면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하.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 거.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0분의 50

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더.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100분의 30
러. 거창군에서 발급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10

-비고: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 2. (생략)

###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3]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제5조제3항 관련)

#### 1. 주차장

감경대상	감경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	50퍼센트

##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감경대상	감경률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82호, 2024. 11. 5., 일부개정]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2] 이용료의 감경기준(제6조 관련)

시설	대상	감경률(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	가. 국가보훈대상자	100분의 50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다자녀가정	100분의 30
	마. 거창군민	
	바.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00분의 20
사. 청소년		
아. 단체		

[비고]  
 1. 이용료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한다.  
 2. 이용료 감경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5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 및 별표 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창포원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20조 관련)

1. 입장료 면제 기준

-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사람
- 다. 65세 이상인 사람
- 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 다음의 법률(이하 이 표에서 “보훈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사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아.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차.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타. 학생 단체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

지도위원

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

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광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 2. 키즈카페, 자전거대여소, 족욕체험장 감면 기준

감면대상	감면율
가. 국민·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0분의 100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자녀 또는 손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수급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또는 손자녀 마. 보훈관련법령에 따른 유공자 등과 그 유족의 자녀나 손자녀 바. 24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 경우 자녀 모두 해당	100분의 50
가. <u>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lt;신설&gt;</u>	<u>100분의 30</u>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타법개정]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의,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 대상·기준 및 보호·관리활동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그 밖의 주민지원사업)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에너지 재생 및 활용시설
2. 오수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3. 마을회관 및 가로등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백두대간 생태교육·체험 등을 위한 시설

**[별표 2] 무료입장 및 시설 사용료 감경 대상**

무료입장	시설 사용료 감경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공식행사 4.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5.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b>30퍼센트 감경</b>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19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14. 그 밖에 생태교육장 이용으로 공공복리 및 공익 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
----------	-------

제출연월일	2025. 8. 19.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 도민체전 기획단을 설치하고 한시정원을 신설함

###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를 신설함(안 제29조)

- 1) 분장사무: 도민체전 개최, 경기운영, 시설정비 등
- 2) 존속기한: 2028. 12. 31.

나. 한시정원을 신설함(안 제30조, 별표 5)

- 1) 한시정원 총수: 일반직 11명
  - 가) 5급 중 1명
  - 나) 6급 이하 중 10명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8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566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8. 7.~8.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9조·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제29조(한시기구)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민체전기획단을 두며, 도민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민체전 개최
2. 경기운영
3. 시설정비 등

제30조(한시정원) 도민체전기획단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신 설>	<u>제7장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u>
<신 설>	<p><u>제29조(한시기구) 도민체전 개최 준비 등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도민체전기획단을 두며, 도민체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도민체전 개최</u></li> <li>2. <u>경기운영</u></li> <li>3. <u>시설정비 등</u></li> </ol>
<신 설>	<p><u>제30조(한시정원) 도민체전기획단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5와 같다.</u></p>

[별표 5] <신 설>

한시기구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제30조 관련)

도민체전기획단		
일반직	총계	11
	5급	1
	6급 이하	10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8명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나. 관련조문: 안 제30조(한시정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566	566	566	1,698

### 3. 관련 의견

2027년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기구인도민체전기획단 설치에 따라 한시정원을 신설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정원 총수 증원: 8명

나. 연간 인건비 증가 총액: 566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재훈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확대함(안 제3조)

1) 4급 이상 ⇒ 5급 이상

나. 포상금 환수 규정 정비함(안 제8조)

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정비함(안 제10조)

1) 위원수 확대: 5명 ⇒ 6명

2) 민간 전문가 1명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정비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6200천원 확보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6. 23.~7.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는 법”을 “법”으로 “에 따라”를 “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법”을 “법”으로 “에 따라”를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으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4급”을 “5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
  -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
  - 라.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를 “제3조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체납액 중 1년차”를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체납액 중 2년차의”를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를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종전 제 3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수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담당관
2. 민원소통과장
3. 재무과장
4. 건설교통과장
5. 군수가 위촉하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u>③ 군수는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u></p>	<p><u>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u></p> <p><u>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u></li> <li><u>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u></li> <li><u>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u></li> <li><u>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u></li> <li><u>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u></li> <li><u>라.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u></li> </ul> </li> <li><u>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u></li> </ol> <p><u>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u></p>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 본문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신 설>**

3.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3조제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8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군수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가.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4.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5. 제3조제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

**제8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수한다.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
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담당관
2. 민원소통과장
3. 재무과장
4. 건설교통과장
5. 군수가 위촉하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포상금, 민간위원 수당

나. 관련조문

- 1) 포상금 지급기준(안 제4조)
- 2)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안 제10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나. 2025년 예산 6200천원

- 1) 포상금: 6000천원
- 2) 민간위원 참석수당: 1명\*2회\*100천원 = 200천원

작성자 재무과장 윤광식

## 관련법령

###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3. 14.>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75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나. 채권(債券)

다. 물품

라. 상품권, 이용권(利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

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27.] [대통령령 제34920호, 2024. 9. 26., 일부개정]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0. 10.]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24-7호, 2024. 10.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301 일반보전금
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 303 포상금
4. 306 출연금
5. 307-01 의료 및 회복비
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12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의 자치법규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1.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제8조(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①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제공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된다.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서 나열되지 않은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금품등 중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된다.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6. 15.] [대통령령 제35552호, 2025. 6. 2., 일부개정]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한)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삭제 <2021. 2. 17.>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

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2. 11.>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본조신설 2012. 2. 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 2025. 3. 21., 일부개정]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4.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평가대상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	------------------

■ 「충남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천안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세입징수포상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 감사담당관,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 「전북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징수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현황

-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결산기준 총 3.7조원
  -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의 징수액에 따라 5~15% 포상금 지급

< 2022년 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 현황 >

구분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기타
건수	32,979,575	59,586	567,135	1,195,161	3,762,536	27,395,157
세액 (천원)	3,738,293,562	281,622,082	19,343,785	1,441,204,870	596,308,531	2,338,479,268

(출처 : 지방세통계연감)

- 「지방세기본법」은 체납된 지방세 세입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조례로 위임

< 관계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 ⑥ (생략)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문제점

- ① 징수포상금은 체납징수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실무자가 아닌 국·과장급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 경기 고양시 등은 관리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어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 ※ 관리자가 사익을 위해 실무자들의 체납 징수실적 또는 은닉재산 정보 등을 가로채는 부당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충남 천안시 등은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국장급(4급) 이상으로 정해 관리자에 해당하는 과장급 누락
- 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공적심의위원회가 없어지자체장의 재량권 남용 및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 곤란
  - 충남 천안시 등은 외부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공정성 저해 우려
- ③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이 타당함에도
  - 부산 기장군 등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포상의 공정성·영예성 훼손 우려
  - 경기 연천군 등은 환수 규정에 이자가산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 가능성
- ④ 행정청 착오를 원인으로 인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고,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 인천 용진군 등은 환수 규정이 없어 재정 누수가 우려되고, 전북 익산시 등은 환수 시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해 국민에게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 전가 우려

## □ 개선방안

- ①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또는 개선
  - 경기도 고양시 등은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대상 기준을 5급(과장) 이상으로 개선
    - ※ 관리자에 대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체납액 직접 징수 등 특별히 인정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지급이 가능하도록 단서로 규정
- ②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개선
  - 부산 기장군, 경기 의왕시, 전남 장흥군은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 마련
  - 충남 천안시 등은 공적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참여를 명시
- ③ 부산 기장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한 환수 및 이자 가산 규정 마련하고, 경기 연천군 등은 포상금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 개선
- ④ 인천 용진군, 경기 고양시 등은 행정청의 착오가 원인이 되어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고, 전북 익산시 등은 해당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산

## 규정 삭제

[타 기관 우수사례]

### ■ 「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포항시의회 의원 1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 5급(과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5-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시행으로 거창군 관광 및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방문의 해 사업 및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다.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정함(안 제5조~제12조)
- 라.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함(안 부칙)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관광진흥법」 제48조·제7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0백만원 확보, 2차 추경 89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령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7. 30.~8.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거창방문의 해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문의 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문의 해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에 힘써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문의 해 행사 운영
2. 홍보활동 및 관광상품개발
3. 컨설팅, 회의 및 교육
4. 지역관광자원 환경개선, 군민의식 고취 등
5.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문의 해 행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이나 홍보를 위한 물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
2.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숙박 및 체험 비용
  - 나. 회의, 교육 등 참석 실비(實費)

제5조(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군수는 방문의 해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정책 및 추진방향 등
2. 홍보활동 지원
3. 군민참여 활성화
4. 평가 및 환류
5. 그 밖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행복농촌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광, 문화, 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광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라. 방문의 해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간사) ① 위원의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문의 해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 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 나. 관련 조문: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합계
준비	119	618	-	737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방문의 해 홍보·마케팅: 267백만원
- 2. 방문의 해 프로그램 및 이벤트 운영: 328백만원
- 3. 방문의 해 홍보상품, 기념품 제작: 92백만원
- 4. 지역관광자원 환경개선: 50백만원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 「관광진흥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4. 10. 2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2023. 6. 20., 2025. 4. 8.>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6.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시행일: 2025. 10. 9.] 제48조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5-
----------	-------

제출일자	2025. 8. 19.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 1. 제안 이유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치유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지원계획의 수립, 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사무의 위탁, 자문,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나. 예산조치: 2025년 예산 314.6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6. 23.~7.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9조단서)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자원”이란 거창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산림치유·치유농업 및 치유 관광 등의 자원을 말한다.
2. “치유산업”이란 치유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치유자원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4. 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그 밖에 치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나. 기반 조성 및 기존 시설의 개선
    - 다. 행사 및 축제
    - 라.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역의 특화된 치유산업 서비스 제공
  3. 치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대표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5. 치유농업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산업기반 조성
  6. 치유산업특구(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지원 및 활성화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치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치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문)** ① 군수는 치유산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자문가”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정책 수립
2. 치유산업 실태조사 및 활용

3. 그 밖에 치유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그 밖에 치유산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치유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산업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현장 컨설팅, 기반구축사업, 홍보마케팅 비용 등

나. 관련조문: 안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
합계	314.6	314.6	314.6	314.6	314.6	1,573
도비	22.5	22.5	22.5	22.5	22.5	112.5
군비	292.1	292.1	292.1	292.1	292.1	1,460.5

3. 관련 의견: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사업을 통해 군 치유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5년)

1. 치유산업 육성 지원: 162.9백만원
2. 향노화 웰니스 기반조성: 90.7백만원
3. 우수 치유농업 시설 육성 시범사업: 56백만원
4. 케어팜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5백만원

작성자 관광진흥과장 옥진숙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9.] [법률 제20920호, 2025. 4. 8., 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74
----------	---------

제출일자	2025. 8. 19.
제 출 자	건강증진과장

##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통합·운영하여 수범자인 군민이 그 내용을 더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금연구역의 지정·절차·변경 등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금연환경 조성을 정함(안 제4조)
- 다. 금연지도원 운영, 직무수행 범위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7조)  
(현행)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3만원 ⇒ (변경) 5만원
- 마.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조의5·제34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별표 5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94,580천원 확보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7. 30.~8.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거창군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4조(금연환경 조성)**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금연교육
  2. 금연교육을 하는 단체나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는 금연클리닉 설치·운영
    - 가. 금연상담
    - 나. 금연보조제 및 홍보물 제공
    - 다. 찾아가는 금연교육 등
  4. 금연 홍보관 설치·운영
  5.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홍보요원 운영.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상남도 등에서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금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거창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금연 지도원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나. 관련 조문: 금연환경 조성(안 제4조), 금연지도원 운영(안 제5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합계(100%)	94,580	94,580	94,580	94,580	94,580
기금(50%)	47,290	47,290	47,290	47,290	47,290
도비(15%)	14,187	14,187	14,187	14,187	14,187
군비(35%)	33,103	33,103	33,103	33,103	33,103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2025년

1. 금연보조제 및 행동용법 물품 등 구입비: 13,340천원
2. 금연홍보물품비: 31,360천원
3. 흡연예방교육비 및 프로그램비: 14,120천원
4. 금연지도원 수당 및 보험료: 35,760천원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 관련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6. “건강친화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9. 12. 3.]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2025. 4. 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2023. 8. 16.>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제목개정 2016. 12. 2.] [시행일: 2025. 10. 2.] 제9조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 6. 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1의2.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의2. 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제2호(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1. 12. 6.]

**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건교육(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 한정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교육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④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감면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 100분의 50 감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전액 면제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 동안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30.>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2	170	330	500
다. 법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3	170	330	500
마.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75	150	300
바.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제2호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5	5	5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사.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아.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차.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5-73
----------	---------

제출일자	2025. 8. 19.
제 출 자	산림과장

### 1.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원인행위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 정비함(안 제1조·제4조·제10조·제13조)

나.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4항)

- 1)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위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5. 15.~6. 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중전 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법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u>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 <p>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p> <p>4.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u>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u>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p> <p>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p> <p>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p> <p>6.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제10조(협약)**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 (생략)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2024. 12. 20.>

⑥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2024. 12. 20.>

[시행일: 2025. 6. 21.] 제12조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2024. 1. 23.>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 1. 2.>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일괄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